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4. 27 선고 2021가단221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각 이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순번 1, 3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3번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4. 8.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87. 8. 27. 접수 제4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7. 11. 접수

제49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80.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 6. 20.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87.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로 통하여 매수하였고, 1987. 8.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7. 2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87.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1987. 8. 21. 매매(매매예약 완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각 이행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3번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각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말소등기의 회복에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1, 3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8. 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신청되어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말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87. 9.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 본등기로,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8. 1.,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6. 12. 각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그 말소등기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된 이 사건 1, 3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3번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각 이행청구 부분

가.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1980. 6. 20. 매매예약은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위 가등기를 전제로 성립되는 권리로, 혼동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¹⁾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위 법 제15조에 따라 경매 등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되는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사건 1, 3번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각 이행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순표

목록

1. 경북 봉화군 D 임야 21025㎡
2. E 임야 89653㎡
3. F 임야 11306㎡. 끝.

1) 참고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등 참조).